[별지 제4호 서식]

농업생물표본 기탁 협약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생물표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생물표본의 기탁에 대하여 기탁자와 수탁자간 상호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서를 체결한다.

기탁자	기관명(상호)			
	성 명		직 위	
	주 소	(전화:)		
수탁자	기 관 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주 소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기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1. 상기 농업생물표본을 기탁하는 자를 “기탁자”이라 칭하고, 기탁받는 자인 표본관리책임자를 “수탁자”라 칭한다.
2. 기탁자는 기탁하고자 하는 농업생물표본의 품목, 확보경위, 보관년도, 기타 연구·전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탁자는 기탁 기간 중에 기탁한 농업생물표본에 대하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의 현장 연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농업생물표본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되, 기탁자와 수탁자의 협의 하에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기탁자는 농업생물표본에 대하여 무상 기탁으로 하며, 기탁 생물표본에 대한 수령 및 반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송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6. 수탁자는 기탁 농업생물표본에 대한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기탁된 농업생물표본의 변형, 손상 등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와 협의하여 수리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기 탁 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수 탁 자 : _____ (인 또는 서명)